

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의 위탁기간이 2025. 6. 30. 만료 예정임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고,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○ 추진의 필요성

-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서울특별시의 공공화된 최상의 글로벌 청소년 숙박공간과 전세계 여행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
-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,
- 여행청소년에게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국내·외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
- 국내·외 여행청소년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지도·보호사업
- 유스호스텔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등

라. 제3자 재위탁 : 해당

- 필요성 :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위탁
 - 제3자 재위탁 중(예정)인 사무 : 2건
 - 카페 운영 1건 및 식당 운영 1건
- (현 계약기간 : 2023.7.1. ~ 2025.6.30.)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
- 개관일자 : 2011. 3. 28.
- 시설규모 : 부지 1,597㎡ / 건물 9,807㎡
- 주요시설 : 객실(95실), 회의실(6실), 편의시설(요리실, 카페, 레스토랑, 세탁실 등)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바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5.7.1. ~ 2028.6.30.)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아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,160백만원('25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1,530백만원, 운영비 1,861백만원, 사업비 338백만원, 사업외지출 및 기타 431백만원

자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3.18., 2009.7.30., 2014.5.14., 2019.9.26.>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노동자에 대한 고용·노동조건 개선노력
 6. 지도·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
 7.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(☎02-2133-4124)